

의안 번호	1677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6.(금)
- 나. 제출자 : 이명녀의원 등 11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1. 6.(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2.(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안 제3조~제4조)
- 점검지원,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안 제5조~제6조)
- 신고체계 마련, 협력체계 구축, 협조요청, 교육, 안심지역 선정(안 제7조~제12조)
- 홍보, 시행규칙(안 제13조~제14조)

다. 근거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우려가 많아, 공중화장실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 제반규정 검토한 바,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6 (제231회-본회의제2차부록)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